

번역업무에 관한 계약

본 계약은 _____에
주소를 둔 _____(대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펜터치 (대표: 김정호,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200X년
__월 __일자로 체결되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번역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협약"을 결성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제시하고 합의함을 목
적으로 한다.

1-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각 사 고유 업무 영역의 결합
을 통해 사업의 원활함과 효율본성을 얻음으로써 영업 및 투
자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업무절차)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갑"이 "을"에게 번역을 의뢰함으로써 발
생하는 번역업무를 말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2-1. "을"은 "갑"의 번역 의뢰에 의해 갑에게 번역서비스를 제공한
다.

2-2. "을"은 "갑"의 번역 의뢰 시 해당 번역물에 대한 견적과 작업
시한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알려주고, 합의된 번역료 및 작업
기한에 따라 번역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갑"이 "을"의 사정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번역완성이 불가능한 작업기한을 요구할
경우 "을"은 번역작업의 착수를 거부할 수 있다.

2-3. "갑"과 "을"은 번역작업 진행 중 "갑" 또는 "을"에게서 발생하
는 사정으로 인하여 번역마감일을 상호 구두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 2-4. "을"은 "갑"이 의뢰한 번역물의 번역을 결정된 마감일까지 완성하여 즉시 "갑"에게 전자메일이나 팩스, 또는 그 외 "갑"과 "을" 간에 합의된 수단으로 발송해야 한다.
- 2-5. **하자보수 및 책임범위:** "갑"은 "을"이 납품한 번역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을"이 해당 번역본을 전송한 날로부터 ___일 이내에 재번역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에게 어떠한 비용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갑"의 재번역 또는 수정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번역상의 오류나 이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부당반품의 금지)

- 3-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의 번역본을 수령한 후 위의 제2-5항에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해당 번역본을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2. 아울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 ① 제2-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정식으로 번역을 의뢰하고 "을"이 번역작업에 착수한 상황에서 "갑"이 "을"의 번역작업 진행 도중에 해당 번역물의 번역의뢰를 취소했을 경우.
 - ② "갑"이 번역 결과물을 수령한 후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였을 경우.
- 3-3. **부당반품 시 위약금:** 부당반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진행된 번역작업이 50% 미만일 경우: 첨부 견적서 금액의 50%
 - 진행된 번역작업이 50% 이상일 경우: 진행된 번역작업의 양을 기준으로 "을"이 산정하여 제시하는 금액.

제4조 (기밀유지의 의무)

"을"은 "갑"과의 번역업무 거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갑"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업무 진행을 위하여 관련된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을"의 기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지켜져야 한다.

제5조 (권리의 귀속)

- 5-1. 본 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번역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 5-2. "을"은 목적물 번역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know-how),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이하 일괄하여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 번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갑"의 사전 서면 또는 구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3. "을"은 목적물의 번역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 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서비스에 대하여 "을"에게 다음과 같이 번역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6-1. 번역료는 제2-2항에 따라 결정된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6-2. "갑"은 확정된 전체 번역료를 번역작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착수시점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번역작업에 착수하는 시점을 말한다. **완료시점**은 본 계약서에 "갑"과 "을"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번역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날을 의미하며, 하자보수기간(번역본 인도 후 ___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번역작업의 완료일은 첨부한 번역의뢰서에 별도 명기하기로 한다. 위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완료시점은 번역작업이 실제로 완료되어 해당 번역본이 본 계약서 및 첨부한 번역의뢰서에 제시한 수단으로 "갑"에게 인도된 날을 의미한다. 아울러 "을"은 완료시점 이전에 계산서를 발급·전달하여 "갑"이 번역료를 지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갑"은 번역의뢰서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을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으로 구분하여 각각 ___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6-3. 단, 위의 2항에서 규정한 번역료 지급일은 "갑"의 업무처리 및 회계 기준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도 합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 6-4. "갑"은 제2-2항에 의해 결정된 번역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금액 지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 6-5. 제2-2항에서 결정된 번역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HWP 또는 DOC 기본 편집 포맷(구입 시 디폴트 값)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 체결 당시 "을"의 웹사이트에서 규정한 페이지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페이지 분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이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제시한 분량에 따른다.

제7조 (지체상금)

- 7-1. "을"은 제2-2항과 2-3항에 의해 결정된 번역작업 마감시한의 초과로 "갑"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진다.

- 7-2. "갑"은 제6-2항 또는 6-3항에 의해 결정된 지불기일의 초과로 "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갑"과 "을" 간 계약 체결일(각 계약 당사자 측의 대표 또는 대리인에 의해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을"이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의 검토를 완료하여 해당 번역본을 "갑"에게 인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밀유지 등과 같이 "갑"과 "을" 양 측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갑"과 "을"은 계약 만료 후에도 유효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항은 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가진 측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9-2. "을"이 번역작업기한을 과도하게 또는 빈번하게 지체함으로써 "갑"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9-3. "을"이 "갑"에게 제공한 번역서비스의 질에 과도한 또는 빈번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9-4. 제2-2항에서 언급한 "을"의 번역작업 착수 거부와 관련하여 그 거부행위가 부당하거나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9-5. 이외에 "갑" 또는 "을"이 각 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법적 구속)

본 계약은 일차적으로 "갑"과 "을" 양 당사자가 계약의 모든 조항을 현재의 의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에 동의함을 나타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계약은 "갑"과 "을"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차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이고 우호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의한 중재 및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관련 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번역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두(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의 대표자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이 각각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__년 __월 __일

*다음 페이지 서명란 (계속)

갑: _____

주소: _____

대표 또는 대리 _____(날인 또는 서명)
(_____)

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시 대표자 날인 _____

을: 펜터치

주소: _____

대표 또는 대리 _____(날인 또는 서명)
(_____)

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시 대표자 날인 _____

*첨부: 번역의뢰서 1부, 견적서 1부